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사회복지사의 날,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01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의 날은 당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4월 22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약칭))의 제정일(3.30.)로 변경, 올 해 10회를 맞이함
-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80만 명*이며, 2개의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4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에 근거한 10개 대상자 분야, 54개 유형의 시설에서 근무
 - 보건복지부 소관 60,894개소, 여성가족부 소관 857개소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는 476,949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약 23.72% 근무
-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
 - 경기도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12.05.11.)
 -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제정(100%),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99개 제정(43.7%)
- 그러나 ‘사회복지사법’ 및 관련 조례는 대부분 ‘권고 및 노력’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우개선의 실효성이 저하

*2016. 2월 기준

-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여야 함을 명시(제3조)
- 3년마다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제3조)
 -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하여 모든 시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 존재
 - 부서(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별 처우수준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이 다르고 처우개선을 위한 협력 및 민-관 합의 구조 부재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저하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관이 임금과 포괄적 의미의 처우에 대한 합의구조 마련
 - 상위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처우개선의 실질적 논의구조 및 실행구조 형성
- 2016년 시작된 ‘따복수당’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종사자 실질임금 상승 제고
 - 종사자에게 실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따복수당 신설 및 지급’
 - 향후 소규모시설, 개인운영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 및 예산확보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향후 인권관점에서의 전면적 접근이 요구됨

2. 주거복지, 4.13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부상

01 주요 내용

- 최근 전세 및 월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주거비부담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고, 4.13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는 주거복지공약을 저마다 앞 다투어 내세우고 있음
- 각 당의 주거안정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 새누리당의 주거복지정책은 현 정부의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확대 운영하는 데 중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제시
 -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 저소득층 주거급여 인상, 전월세상한제 등임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안정 공약
새누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리모델링 1-2인 가구 임대주택 제공 • 2017년까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값싼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 • 노인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연간 약800가구 공급 •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1-2인가구 전용임대주택 24000가구 공급 • 대학연합기숙사 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활용 임대주택 재고량 5.2%에서 13%로 확대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공급) •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 이상 공급 및 대출요건 완화
국민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건설 공급 (만35세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 기준결정)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값 임대 공정주택 연간 15만가구 이상 공급 • 저소득층 주거급여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 인상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로 도입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 분양가상한제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02 시사점

- 선거용 주거복지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이 필요
 -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집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 조합원 1가구 공급제한)을 야당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만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실천적인 정책 추진 요구
 -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주거안정 공약은 공공임대주택공급인 만큼 현재 5%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량을 OECD 평균인 11%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총선이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건설은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전인 만큼 운용수익과 위험대비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함
 - 서민 임차가구의 거주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선진국은 임대료 급등 지역에는 차치단체가 가격조정을 허용하고 있음. (예) 뉴욕시 임대료안정화 제도 등)
- 경기도는 도시 인근의 도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임대료상한제도 도입 시, 임대료 급등지역에 지역임대료제도 운영을 고려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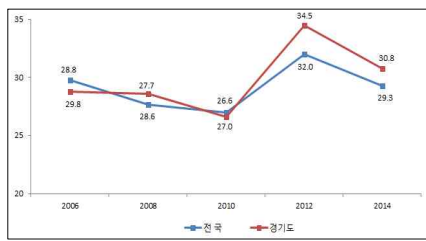
1. 경기도민 주거비 부담, 완화장치 필요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경기도의 주거비 부담은 타 광역시도보다 높으며, 도내에서도 소득 계층별·지역별 주거비 부담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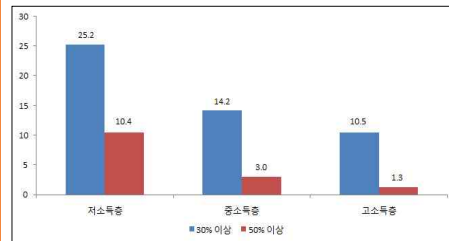
- 현재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Rent to Income Ratio)임
 - 이와 관련해 미국 주택개발청은 RIR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도한 주거비부담(excess cost burden)’, 50%를 초과할 경우 ‘심각한 주거비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정의
- 경기도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30.8%로 전국평균(29.3%)보다 높고,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RIR지수는 30% 내외를 유지하고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2012년부터 RIR지수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불안정한 추이
 - 경기도의 RIR지수는 2014년 기준 30.8%이며, 주거비 부담이 전 소득계층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RIR 30% 이상이 25.2%, RIR 50% 이상이 10.4%로 심각한 수준

* 경기복지재단 (2015),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실태분석 연구」

[그림 1] RIR지수 추이



[그림 2]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분포



- 도내 시군 중 RIR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양주·오산이며, 이 외 11개 지역도 30%를 초과
 -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도내 시군별 RIR지수는 양주·오산이 50%를 초과하여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고, 안성·고양·안양·과천·군포·용인·하남·포천·김포·가평·남양주도 RIR지수가 30%를 초과하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지역에 해당

[표 1] 2014년 도내 시군별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수원	22.5	안산	25.1	의왕	21.3	광주	28.0
성남	27.5	고양	37.9	하남	31.7	양주	61.8
의정부	24.6	과천	36.4	용인	33.1	포천	36.6
안양	37.5	구리	26.5	파주	10.0	여주	6.7
부천	18.0	남양주	31.5	이천	29.1	연천	22.3
광명	22.4	오산	50.9	안성	39.9	가평	31.6
평택	27.4	시흥	21.0	김포	32.5	양평	11.2
동두천	26.3	군포	35.6	화성	27.4	경기	30.8

*단위: %

** 시군별 자료는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요함

- 도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이 추진 중인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시군별 ‘적정 임대료 기준(reasonable rent)’을 마련하고, 그 부족분을 소득수준별·지역별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 필요

2. 재단 교육과정 안내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제8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4.12~ 6.28(12주), 매주 화 오후 5~9시 • 내 용 : 복지 경영을 위한 조직관리·리더십·자원관리·마케팅 교육 • 대 상 : 복지기관(단체) 최고지도자, 사회복지 관련 고위공무원 등 (30명)

03 FACT CHECK

주거급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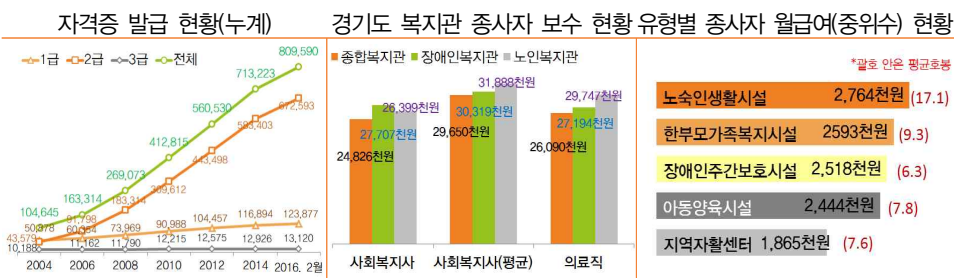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주거급여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에 따른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주거급여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2015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88,317원이며, 경기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76,000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맞춤형 급여로 변경한 이후 지원가구는 2013년 73만가구에서 2015년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지원금액도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하 1만 가구를 조사한 ‘저소득 가구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임대료 중 주거급여액의 비중은 수도권이 39.6%, 전국 평균도 44.9%에 불과
 - 주거급여를 받는데도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의미하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37%으로, 현재의 낮은 주거급여 액수는 주거환경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의미
-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RIR이 30%를 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같은 일정수준이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에 대해 최저주거기준 수준으로 주택수리 유도(뉴욕시 하커비 판결 ‘임대업자, 당신이 그 집에서 살아봐’)

* 자료: 국토교통부(주택바우처제도 소개)

**자료: 국토교통부(20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04 통계로 보는 복지

사회복지사의 규모 및 보수 현황



*단위: 건, 원

자료 : (좌)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 (중)경기도 내부자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월 기준 누적 취득자는 809,590명임
 - 2급이 672,593명으로 가장 많고, 1급이 123,877명, 3급은 13,120명 순임
- 2015년 경기도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관장이하) 평균 보수(연봉)*는 노인복지관 3천188만8천원, 장애인복지관 3천031만9천원, 종합복지관 2천964만원으로 조사됨
 - 일반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2천482만6천원에서 2천770만7천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이 아닌 이용·생활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월 186만5천원에서 276만4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년수(호봉)가 달라 절대적 비교는 어려우나, 2015년 도시근로자 임금(월 312만8천원)에 비해 낮은 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노력과 함께 분야(시설유형)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

* 1년 만근, 호봉 인정자 2,464명 대상 전수조사

** 경기복지재단(2014).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